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적합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전기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의 경우, 파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신고를 완료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제품관리 시스템(<https://chemp.me.go.kr>)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하며,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에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대표제품의 “신고인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로써 파생제품에 대한 변경신고를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대표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파생제품에 변경 전의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신고증명서에 표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의 권리는 상실되며,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9.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10조제8항에 다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0.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12. 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13. 화학제품안전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